

보건복지 ISSUE & FOCUS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



임성은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복지센터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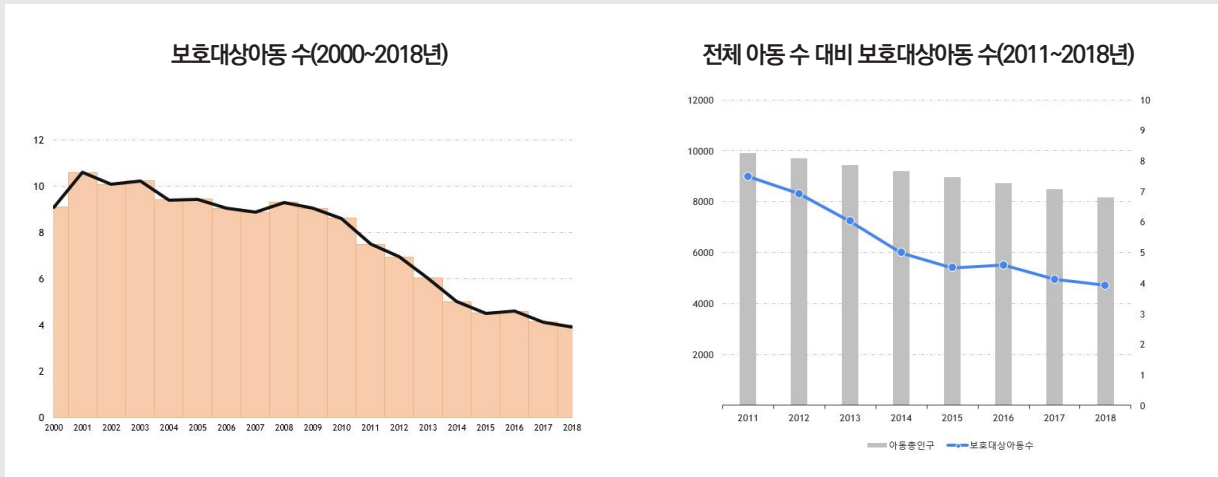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및 특성 변화와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요구가 증대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둘째 전문성 강화, 셋째 단계적 전환을 설정하고, 가정외보호를 제공하는 5개 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성 및 전환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01. 들어가며

- ◆ 오랜 기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외보호와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해 왔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2000년대부터 기능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옴.
 -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가정보호의 중요성 증대, 아동보호 기능의 전문화 및 다양화 요구 확대, 아동보호의 질적 강화를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등과 같은 인구·사회적 변화 과정을 경험함.

[그림 1] 보호대상아동 발생 추이(2000~2018년)

(단위: 천 명)



주: 원가정 귀가 및 연구자 인도 아동을 제외한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비율임.

자료: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아동복지시설은 그 유형과 역할에 따라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됨.

- 가정외보호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은 다시 '생활 중심의 시설'과 '치료·훈련 중심의 시설'로 구분됨.
 - '생활 중심의 시설'은 일상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여기에 해당함.
 - '치료·훈련 중심의 시설'은 일시보호, 치료, 자립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이 이에 해당함.

<표 1>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유형 및 기능

구분		기능
생활 중심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치료 훈련 중심	아동일시 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일부 발췌.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 이 글¹⁾에서는 위의 '5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아동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변화 및 특화의 방향성을 이끌어 내고 기능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2.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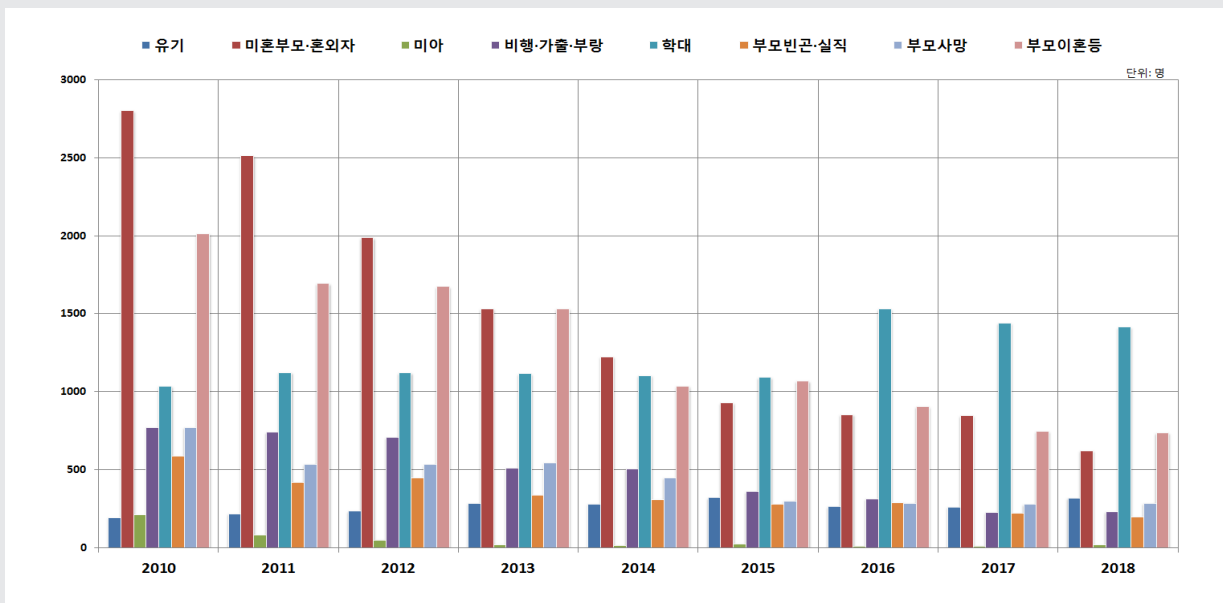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 시설의 운영과 기능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약 70%, 공동생활가정이 약 75% 수준임.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변화) 과거에는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함.

- 산업화·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가정 내 학대, 빈곤, 이혼 및 별거로 인한 해체 가족이 증가함.
-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거에는 '미혼모부의 자녀'나 '부모의 이혼'이 가장 많았으나, 2015년부터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비율이 큰 폭으로 급증함.

[그림 2]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추이(2010~2018년)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1) 임성은 외(2019)에서 발췌·요약한 자료임.

- ◆ (전문 치료 필요 아동 증가) 학대 등으로 인해 행동 문제, 성격장애, 발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복지시설 내에 증가함.
 - 단순 아동보호에서 벗어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성장 발달 측면에서 전문적인 심리·정서 치료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
 - 한국아동복지협회(2018)에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 입소 아동 대부분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학대 관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

03. 아동정책 환경 변화

-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게 하는 진전을 이룸.
 -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빠른 시일 내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함(2019. 5. 23.).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은 「아동복지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함.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와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과 연계'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재편을 강조함.
 - 급증하는 학대 피해 또는 경계선 지능 문제 등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도록 아동양육시설 기능의 전문화·다양화, 개방화, 소규모화 유도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

04.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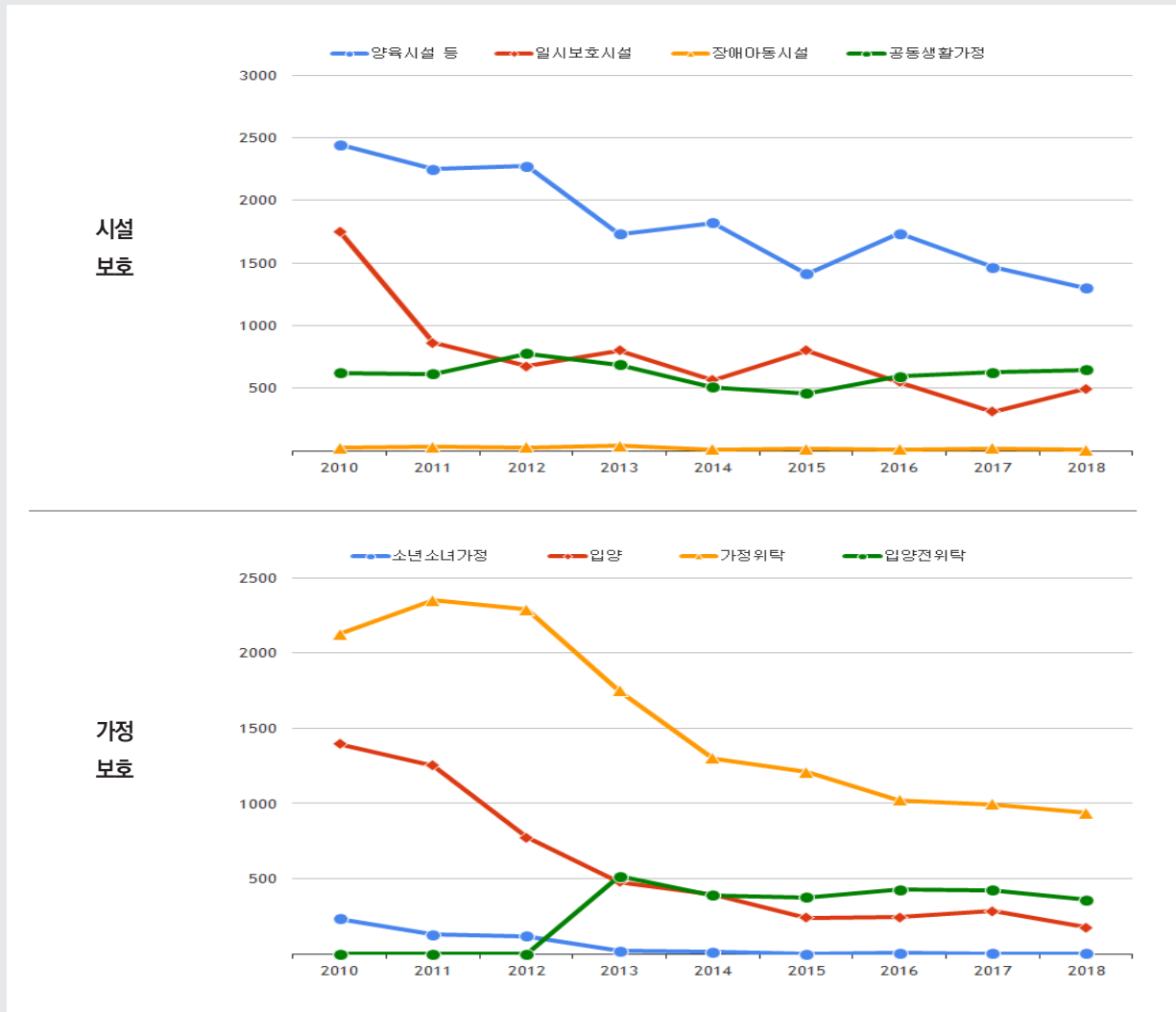
- ◆ (시설 공급의 지역 편차)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쓸림이 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미설치 지역이 많음.

-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1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2개, 자립지원시설은 12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1개이며, 공동생활가정은 558개임.
 -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 46.1명, 아동보호치료시설 40.6명, 아동일시보호시설 22.7명, 자립지원시설 18.9명, 공동생활가정 3.1명임.

- ◆ (아동보호의 지역 편차)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역별 '칸막이'가 있어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함.
 -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기초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 사업 운영비를 책임지므로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제한됨.
 - 기초 단위가 아닌 광역 시도 차원에서 예산을 총괄 관리하여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라도 지역을 불문하고 아동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시설보호 중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그림 3).
 - 아동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원가정 양육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가정보호를 우선 제공하고 시설보호는 최소화하도록 권고함.
 - 대형 시설에서의 집단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종사자와 8인 미만의 아동이 함께 가정형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구조인 공동생활가정이 가정형 보호로 인식되고 있음.
 - 대규모 집단보호 및 보호 기간 장기화에 따라 개별화된 보호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인한 아동 발달 지연과 가족 관계 회복 및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친가정 복귀 및 연고자 가정의 대리양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위탁가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가정을 통한 아동보호가 정책 방향으로 제시됨.

[그림 3]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추이(2010~2018년)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05.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원칙 및 방향성

-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위해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전문성 강화', '단계적 전환'의 3대 원칙과 세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4]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원칙 및 방향성

원칙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전문성 강화	단계적 전환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단기적 시설 보호 지향 •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관계 회복 서비스 제공) • 아동·가족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맞춤형 통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세분화 및 전문화 (복합 기능형 또는 치료형 특화) • 사례관리 체계화 • 전문 인력 자격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및 중장기 전환 • 서비스 제공 및 공급의 형평성 보장 •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

[원칙 1]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 입양을 제외한 가정외보호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임에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호 종료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시설보호를 받고 있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기능 정립이 필요함.
-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가정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아동과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함.
- 가정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세심한 사정(assessment)과 사례관리를 통해 파악한 아동·가족의 ‘욕구’에 기반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해야 함.

[원칙 2] 전문성 강화

- 연령, 특별한 치료나 보호의 필요 여부, 보호 기간 등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세분화·전문화’해야 함.
- 아동·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체계화된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함.
-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원칙 3] 단계적 전환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단기)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에 따라 민간기관으로서 아동보호·양육 서비스 집중, 일시보호 기능 강화, 전문 치료형 시설 확대.

- (장기)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내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
-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예산으로 인해 지역별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보호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함.

06.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기능 전환 방안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의 연령대별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영아(0~36개월 미만), 아동(37개월~만 12세 미만), 청소년(만 12~18세)으로 구분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세분화함.
 - 아동의 성장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가 가능하고, 연령 위계로 인한 아동 간 상호작용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
-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가 늘고 있으므로 소규모 인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기준을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으로도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일시보호시설 형태를 확대함.
- 가정에서 급히 분리한 아동 중에는 심각한 학대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으므로 집중 치료 일시보호시설을 신설해 시설 내 혹은 연계 기관에서 집중 치료를 제공함.

〈표 2〉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 전환 방안

현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말 기준, 전국 12개 설치(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양 전 아동 대상 아동일시보호시설 포함) •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 • 법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 아동일시보호시설, 대규모 시설보호 • 최대 6개월의 아동일시보호 기간이 종료되어도 장기간 보호하는 사례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편차를 최소화하여 전국에 확대 설치(필요시 권역별 추가 설치 가능) • 연령대별 일시보호시설 세분화 및 주택형 소규모 집중 치료 일시보호시설 신설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유형 전환 → ‘시설형 일시보호시설(중규모 이상)’과 ‘주택형 일시보호시설(소규모)’이 상존 • 6개월 초과 거주 금지 권고

◆ 아동양육시설

-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가정외보호 거점 기관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단기 보호, 중장기 보호, 전문 서비스, 자립 지원 서비스 등으로 기능 특화를 하거나 다기능으로 영역을 세분화함.

- 장기적으로는 아동 보호·양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대안적 돌봄 기관으로 기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종합복지시설로 기능함.

〈표 3〉 아동양육시설 기능 전환 방안

구분	현행	변경
아동양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말 기준, 전국 241개 설치. • 법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로 기능함. • 보호 기간은 아동이 18세에 이르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전까지임. •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집단생활시설 형태의 보호 방식으로 인해 개별 아동에 대한 세심한 보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여전히 정원과 현원을 줄여 소규모 숙소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특화: 단기 보호, 중장기 보호, 전문 서비스, 자립 지원 서비스 등 • (단기) 지역사회 가정외보호 거점 기관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 (장기) 생활형 중심에서 치료형 시설로 전환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전문성을 특화하거나 양질의 대안적 돌봄 기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기능함. • 자립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보호아동의 연령·단계·수준별 및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공동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아동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며, 보건복지부의 시설 설치 규정을 따르고 시설 평가를 받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 환경 질이 유지되는 순기능이 있음.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공동생활가정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의 효율화 제고는 아동보호 환경과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함.
 - 기존의 연구(정익중, 2014; 장진희&허청아, 2015)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1개의 사무국과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하나의 법인체처럼 구성되는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또는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함.
 - 사무국은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아동 양육에만 집중하여 질 높은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표 4〉 공동생활가정 기능 전환 방안

구분	현행	변경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말 기준, 전국 558개 설치. •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서 정체성이 모호함.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 투명성, 운영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아동피해쉼터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유형을 변경함. •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1개의 사무국과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하나의 법인체처럼 구성되는 위성형/센터형 또는 염주형 공동생활가정으로 유도함. •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지역 또는 권역 단위로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함.

◆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형 시설의 정체성 정립 및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 ‘가’형은 판사가 보호 조치를 결정하나 법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과 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받음.
 - ‘나’형은 복합적인 정서·행동 문제 혹은 경계선 지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양적 규모를 확대함.

〈표 5〉 아동보호치료시설 기능 전환 방안

구분	현행	변경
아동보호 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말 기준, 전국 11개 설치. • ‘가’형: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형: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형과 ‘나’형의 정체성 확립 → (단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형 시설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함. → (장기) ‘가’형은 법무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함. • ‘나’형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양적 확대 및 기능 강화 → 기존 시설형과 신규 주택형이 공존하는 방식. →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함. • 전문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기능 강화 → ‘보호+치료+교육+자립’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도 가능함.

◆ 자립지원시설

-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립지원시설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타 유형 아동복지시설과의 기능 조정이 필요함.
- 보호종료아동의 연령도 18세를 넘겨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을 초과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표 6〉 자립지원시설 기능 전환 방안

구분	현행	변경
자립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말 기준, 전국 12개 설치. •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도달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자립지원시설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타 유형 아동복지시설(예: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기능을 조정함. → 취업이나 자립 지원 인력을 보충하여 아동 보호 종료 전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장기) 보호종료아동의 연령도 18세를 넘겨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음.

07. 나가며

- ◆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인구·사회적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그 기능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 조례도 개정해 실질적인 시설의 기능을 조정해야 함.
-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분류함.
 - 이후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의 하위 영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아동복지법」에서 시설 유형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아동일시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일원화함.
 - 양 기관을 통해 아동보호가 의뢰된 아동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²⁾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호받으며, 초기 상담과 건강·심리 검사, 치료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
 - 특히 심각한 수준의 학대피해아동은 쉼터 중심으로 보호·치료를 긴급 제공함.
 -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의 연령대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적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개정해야 함.
 - ‘아동양육시설’은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되, 자립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공동생활가정’은 일시보호, 단기·장기 보호, 치료, 자립의 기능이 모두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취업훈련 및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가’형과 ‘나’형에 대한 구분은 있으나 행정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가’형 시설은 개정 없이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상으로는 각 시설별로 ‘가’형과 ‘나’형 중 어느 시설에 속하는지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소년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가’형 시설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하나, 관계 부처 간 논의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

.....

2)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자립지원시설 입소 대상자는 보호종료아동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 역시 관계 부처 간 논의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

◆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가정보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함.
 - '가정보호'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가정보호가 아닌 시설보호에 해당되나, 현재로서는 가정보호에 가장 가까운 보호 형태임.
 - 또는 소속사회를 통해 최대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을 '가정보호'로 해석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다른 나라에 적용된 사례를 파악하여 어느 형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가 '가정형 보호'에 해당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주된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한 아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시설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동의 발달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현재와 같이 시설의 종사자(주된 양육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 임성은, 황주희, 이민경, 강지원, 조영림, 김형모, ...손병덕. (2019).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진희, & 허청아. (2015).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01.
- 정익중. (2014). 아동 청소년그룹홈 실태조사 연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 9. 24. 인출.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vw_cd=MT_ZTITLE&list_id=D3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 9. 24. 인출.
- 한국아동복지협회. (2018). 2018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문제행동 실태조사.

집필 임성은 부연구위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문의 044-287-8274